

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8월 8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8월 12일

3. 개정이유

-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·공포(2001. 7.24, 법률 제6490호)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·공포(2001. 11. 22, 대통령령 제1741호)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개선·보완사항을 정하여
- 도민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발생 억제 및 옥외광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가.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추가(제4조)

- 횡단보도 안전표시등·지상 변압기함
- 가로등 자동점멸기함, 지하도·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
- 교통안전시설물·낙석방지시설물·방음벽·계단등

나.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거나 빛이나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, 광고물등에 피뢰설비 설치·관리 의무 추가(제6조)

- 다. 창문이용 광고물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 하고 당해 건물 사용자의 성명·주소·상호·상표·전화번호·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(제11조)
- 라. 공연간판중 지주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제13조)
-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의 높이 5미터, 1면의 면적 10제곱미터 합계 면적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, 네온·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 사용금지
- 마. 하나의 지정게시판이나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토록 규정(제15조)
- 바. 광고물관리심의 소위원회 심의사항 규정 신설(제20조)
- 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전
 - 도지사가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등
- 사.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의 확대(제22조)
-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
 -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
- 아. 제거된 광고물의 관리등 규정 신설(제24조)
- 광고물등을 제거한 취지, 보관장소를 광고물 등이 있던곳에 표시하여야 하고, 광고물의 종류, 수량, 내용등을 시·군게시판 또는 공보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

5. 검토의견
- 충청북도육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
○ 상위법인 육외광고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, 불법 광고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육외광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하여 도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비하여 입법예고 동의견수렴을 통하여 우리도의 실정에 맞게 반영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